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4. 2.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08호로 2024년 2월 8일 차인영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 신설
- 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조항 신설
- 다.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조항 신설
- 라.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조항 신설
- 마.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2. 9.~ 2.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5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를 근거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7조는 법 제2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23조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 체계¹⁾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제36조제3항에서 구청장에게 부여한 의무를 근거로 해당 조항을 신설함.

1)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체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을 통해 신설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로써 법 제2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서울시 및 서울 10개의 2)자치구에서는 해당 예산제도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7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에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22년 '3)탄소중립 그린도시', '23년 '4)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공모 등을 통해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현재 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추가적인 공모 계획이 없음에 따라 우리 구는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 구도 여름에는 극심한 폭우 및 폭염, 겨울에는 잦은 폭설 등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로 부여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 탄소중립도시의 추진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2) 2)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동작구, 노원구, 강동구, 종로구, 은평구

3) 환경기술·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구현하는 도시로 수원시, 충주시가 선정되었음.

4) 온실가스 감축 + 흡수원 확대로 '실질 탄소 배출량을 0 (Net-Zero)'으로 만드는 도시로, 10개소 조성 예정('30년)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히 규정하였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개선 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계·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해양수산·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